

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
「주민등록법」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,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한 자(폐문부재, 수취인불명 등)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제 목 :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
2. 공고기간 : 2026. 6. 10.(수) ~ 2026. 6. 26.(금) *14일 이상
3. 대 상

성명	생년월일	주소	발급기간	사유
남○우	2009.05.29.	노원구 공릉로58길 176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지○우	2009.05.18.	노원구 공릉로58길 176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박○현	2009.05.11.	노원구 공릉로59길 25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장○유	2009.05.18.	노원구 공릉로59길 25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고○진	2009.05.28.	노원구 공릉로 351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채○호	2009.05.03.	노원구 공릉로 351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김○석	2009.05.09.	노원구 노원로18길 19	2026. 6. 1. ~ 2027. 5. 31.	폐문부재

4. 신청장소 : 노원구 관내 주민센터

5. 발급안내

-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신청인이 직접 제출
 -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관할 통장 및 이장의 확인 또는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, 배우자,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동행
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사진1장(3.5cmx4.5cm) 제출 (다만, 제출한 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)
- ※ 위 발급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
6. 문 의 : 노원구 하계1동주민센터 행정민원팀(☎ 02-2116-2571)

2026년 6월 10일

하 계 1 동

